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박충권・이종배・김승수

김선교 • 고동진 • 안상훈

신성범 • 권영진 • 최수진

유영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최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최 및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

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법률 제 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 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로 유 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 다)가 된다.
 - ② 법원은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15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18 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14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 관하여야 한다.
-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 · 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 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5 항, 제6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경력정보
 - 2.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 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 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 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 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15년
 -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 강력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된 기간
- ⑥ 법무부장관은 제17조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 제1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 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 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 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20년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10년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 부터 7년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 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 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 1.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 2.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특 정강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제14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

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

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된 기간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2. 나이
-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5. 사진
- 6.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 7.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 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

-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신상정보 등록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제2조의 특정강 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 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 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특정강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과 제15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 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 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대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문(제18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등본 |

한다.

- 제1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14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수 있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 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

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 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 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 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

<u>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u> <u>하여야 한다.</u>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송달하여야 한다.
- ①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
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
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 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 5조제5항, 제6항 및 제16조제3 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 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경력

<u>정보</u>

- 2.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 명, 횟수)
-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 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

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 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 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 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6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 ①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 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 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 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 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신 설>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 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사형, 무기징 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 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초과 10 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이하의
 집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15년
-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사람: 1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 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 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 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 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 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 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 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

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 로 정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 하지 아니한다.
-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 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에 수용된 기간
-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 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 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 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⑥ 법무부장관은 제17조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

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 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 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 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 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6개월
-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제1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을 면제한다.

-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 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 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 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 청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 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특정

<u>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u> 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한다.

제2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 1.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 2.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

<신 설>

된 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 시 페기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 대상 특정강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제14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 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 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 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 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2. 나이
-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 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5. 사진
- 6.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포함한다)
- 7.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 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 ①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 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

<신 설>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 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 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신상정보 등록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u>자</u>
-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 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

 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

 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
 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
 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